

●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-018호

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3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감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**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(2023년 3월 27일까지)**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귀하(사)의 **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** 함과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53조에 의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
-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 등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(2023년 3월 17일까지)

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

※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, ☎ 02-2110-1371

붙임 대상자 명단 1부. 끝.
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의 3% 가산금과, 매월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,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가산금 및 증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, 납부 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바람)

(단위 : 원)

연 번	위반법	고지번호	체납자	실명번호(사업자 /법인등록번호)	세목별 부과금액		총 부과금액	체납자 주소
					과태료	(중)가산금		
1	단말기 유통법	01-78-1800-04 53-0012-073	나하나(유비 코퍼레이션)	122-31-65229	1,500,000	729,000	2,229,000	경기 부천시 부일로 500 ·경기 부천시 부천로36 사석빌딩 3층
2	단말기 유통법	01-78-2200-04 53-0000-15	(주)에스원 솔루션	689-88-01886 (110111-7****5)	14,107,920	1,995,060	16,102,980	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, 206호(에이스하이엔드타워10)
3	전기통신 사업법	01-78-2200-04 53-0000-222	(주)에이치랩	409-81-49437 (200111-0****3)	7,000,000	294,000	7,294,000	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, 809호(가산더스카이밸리1차)
4	전기통신 사업법	01-78-2200-04 53-0000-223	(주)티인서비스	401-87-01334 (110111-7****4)	7,000,000	294,000	7,294,000	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, 1013호(삼성아이티밸리)